**「행정불복심사법」**

[법률 평성26<2014>년제68호, 2017.3.31. 최종개정]

**□ 개 요**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은 사후구제제도로서의 행정불복신청에 대한 일반법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행정법에서의 행정구제법 중 하나로 분류되며,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6장 87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章 総則**  第一条　目的等  第二条　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  第三条　不作為についての審査請求  第四条　審査請求をすべき行政庁  第五条　再調査の請求  第六条　再審査請求  第七条　適用除外  第八条　特別の不服申立ての制度  **第二章 審査請求**  **第一節 審査庁及び審理関係人**  第九条　審理員  第十条　法人でない社団又は財団の審査請求  第十一条　総代  第十二条　代理人による審査請求  第十三条　参加人  第十四条　行政庁が裁決をする権限を有しなくなった場合の措置  第十五条　審理手続の承継  第十六条　標準審理期間  第十七条　審理員となるべき者の名簿  **第二節 審査請求の手続**  第十八条　審査請求期間  第十九条　審査請求書の提出  第二十条　口頭による審査請求  第二十一条　処分庁等を経由する審査請求  第二十二条　誤った教示をした場合の救済  第二十三条　審査請求書の補正  第二十四条　審理手続を経ないでする却下裁決  第二十五条　執行停止  第二十六条　執行停止の取消し  第二十七条　審査請求の取下げ  **第三節 審理手続**  第二十八条　審理手続の計画的進行  第二十九条　弁明書の提出  第三十条　反論書等の提出  第三十一条　口頭意見陳述  第三十二条　証拠書類等の提出  第三十三条　物件の提出要求  第三十四条　参考人の陳述及び鑑定の要求  第三十五条　検証  第三十六条　審理関係人への質問  第三十七条　審理手続の計画的遂行  第三十八条　審査請求人等による提出書類等の閲覧等  第三十九条　審理手続の併合又は分離  第四十条　審理員による執行停止の意見書の提出  第四十一条　審理手続の終結  第四十二条　審理員意見書  第四節 行政不服審査会等への諮問  **第五節 裁決**  第四十四条　裁決の時期  第四十五条　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の却下又は棄却  第四十六条　処分についての審査請求の認容  (第四十七条)  第四十八条　不利益変更の禁止  第四十九条　不作為についての審査請求の裁決  第五十条　裁決の方式  第五十一条　裁決の効力発生  第五十二条　裁決の拘束力  第五十三条　証拠書類等の返還  **第三章 再調査の請求**  第五十四条　再調査の請求期間  第五十五条　誤った教示をした場合の救済  第五十六条　再調査の請求についての決定を経ずに審査請求がされた場合  第五十七条　三月後の教示  第五十八条　再調査の請求の却下又は棄却の決定  第五十九条　再調査の請求の認容の決定  第六十条　決定の方式  第六十一条　審査請求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四章 再審査請求**  第六十二条　再審査請求期間  第六十三条　裁決書の送付  第六十四条　再審査請求の却下又は棄却の裁決  第六十五条　再審査請求の認容の裁決  第六十六条　審査請求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五章 行政不服審査会等**  **第一節 行政不服審査会**  **第一款 設置及び組織**  第六十七条　設置  第六十八条　組織  第六十九条　委員  第七十条　会長  第七十一条　専門委員  第七十二条　合議体  第七十三条　事務局  **第二款 審査会の調査審議の手続**  第七十四条　審査会の調査権限  第七十五条　意見の陳述  第七十六条　主張書面等の提出  第七十七条　委員による調査手続  第七十八条　提出資料の閲覧等  第七十九条　答申書の送付等  **第三款 雑則**  第八十条　政令への委任  **第二節 地方公共団体に置かれる機関**  **第六章 補則**  第八十二条　不服申立てをすべき行政庁等の教示  第八十三条　教示をしなかった場合の不服申立て  第八十四条　情報の提供  第八十五条　公表  第八十六条　政令への委任  第八十七条　罰則  **附　則**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제2조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제3조 부작위에 대한 심사청구  제4조 심사청구하여야 하는 행정청  제5조 재조사 청구  제6조 재심사 청구  제7조 적용제외  제8조 특별불복신청제도  **제2장 심사청구**  **제1절 심사청 및 심리관계인**  제9조 심리원  제10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심사청구  제11조 총대표  제12조 대리인에 의한 심사청구  제13조 참가인  제14조 행정청에 재결할 권리가 없어진 경우의 조치  제15조 심리절차의 승계  제16조 표준심리기간  제17조 심리원이 될 자의 명부  **제2절 심사청구절차**  제18조 심사청구기간  제19조 심사청구서의 제출  제20조 구두에 의한 심사청구  제21조 처분청등을 경우하는 심사청구  제22조 잘못 안내한 경우의 구제  제23조 심사청구서의 보정  제24조 심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각하재결  제25조 집행정지  제26조 집행정지의 취소  제27조 심사청구의 취하  **제3절 심리절차**  제28조 심리절차의 계획적 진행  제29조 변명서의 제출  제30조 반론서 등의 제출  제31조 구두의견진술  제32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3조 물건의 제출요구  제34조 참고인의 진술 및 감정의 요구  제35조 검증  제36조 심리관계인에 대한 질문  제37조 심리절차의 계획적 수행  제38조 심사청구인 등에 의한 제출서류 등의 열람 등  제39조 심리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40조 심리원에 의한 집행정지의 의견서 제출  제41조 심리절차의 종결  제42조 심리원의견서  제4절 행정불복심사회 등에의 자문  **제5절 재결**  제44조 재결 시기  제45조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각하 또는 기각  제46조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인용  (제47조)  제4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49조 부작위에 대한 심사청구의 재결  제50조 재결의 방식  제51조 재결의 효력발생  제52조 재결의 구속력  제53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3장 재조사 청구**  제54조 재조사 청구기간  제55조 잘못 안내한 경우의 구제  제56조 재조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된 경우  제57조 3개월 후의 안내  제58조 재조사 청구의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  제59조 재조사 청구의 인용 결정  제60조 결정의 방식  제6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재심사 청구**  제62조 재심사청구기간  제63조 재결서의 송부  제64조 재심사청구의 각하 또는 기각의 재결  제65조 재심사청구의 인용의 재결  제66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장 행정불복심사회 등**  **제1절 행정불복심사회**  **제1관 설치 및 조직**  제67조 설치  제68조 조직  제69조 위원  제70조 회장  제71조 전문위원  제72조 합의체  제73조 사무국  **제2관 심사회의 조사심의절차**  제74조 심사회의 조사권한  제75조 의견진술  제76조 주장서면 등의 제출  제77조 위원에 의한 조사절차  제78조 제출자료의 열람 등  제79조 답변서의 송부 등  **제3관 잡칙**  제80조 정령에의 위임  **제2절 지방공공단체에 설치되는 기관**  **제6장 보칙**  제82조 불복신청을 하여야 하는 행정청 등의 안내  제83조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복신청  제84조 정보의 제공  제85조 공표  제86조 정령에의 위임  제87조 벌칙  **부칙** |